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 2 서식] 〈신설 2017. 9. 26.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(해당자만 기재)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제출인
(매수인)</td><td colspan="2">성명(법인명)</td><td colspan="2">주민등록번호(법인 · 외국인등록번호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주소(법인소재지)</td><td colspan="2">(휴대)전화번호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① 자금
조달계획</td><td rowspan="3">자기
자금</td><td>② 금융기관 예금액
원</td><td>③ 부동산매도액 등
원</td></tr>
<tr><td>④ 주식 · 채권 매각대금
원</td><td>⑤ 보증금 등 승계
원</td></tr>
<tr><td>⑥ 현금 등 기타
원</td><td>⑦ 소계
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차입금 등</td><td>⑧ 금융기관 대출액
원</td><td>⑨ 사채
원</td></tr>
<tr><td>⑩ 기타
원</td><td>⑪ 소계
원</td></tr>
<tr><td>⑫ 합계</td><td colspan="2">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⑬ 입주 계획</td><td>[ ]본인 입주 [ ]본인 외 가족 입주
(입주 예정 시기 : 년 월)</td><td>[ ]임대(전 · 월세)</td></tr>
</table>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

유의사항

1. 제출하신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는 국세청 등의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
2.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,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법 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본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해당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작성방법

1. ① 자금조달계획란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에 대하여 기재하고,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매수인별로 작성하며,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실제 거래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.
2. ② ~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.
3. ② 금융기관 예금액란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 명의의 예금(적금 등)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.
4. ③ 부동산매도액 등란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를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또는 재건축, 재개발 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기재합니다.
5. ④ 주식 · 채권 매각대금란에는 본인 명의 주식 · 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.
6. ⑤ 보증금 등 승계란에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 승계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. (대출금 승계는 제외)
7. ⑥ 현금 등 기타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② ~ ⑤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본인의 자산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(금융기관 예금액 이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포함)을 기재합니다.
8. ⑧ ~ ⑩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외부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.
9. ⑧ 금융기관 대출액란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각종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기재합니다.
10. ⑨ 사채란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.
11. ⑩ 기타란에는 ⑧ ~ ⑨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차입금 등을 기재합니다.
12. ⑦에는 ② ~ ⑥의 합계액을, ⑪에는 ⑧ ~ ⑩의 합계액을, ⑫에는 ⑦과 ⑪의 합계액을 기재하며,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실제 거래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.
13. ⑬ 입주계획란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으로 기재하며, 본인 입주란 매수인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, 본인 외 가족입주란 매수인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,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를 기재합니다. 또한 첫 번째 입주자가 다세대,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로 중복하여 기재합니다.